



중국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관리제도

I. 입법 배경

1. WTO 가입과 시장개방의 진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오랫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운영해오던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체제로 진입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시장개방 프로그램에 따라 비교적 성실하게 시장개방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법제의 정비도 필요, 관련 법제 정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의 정비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1986년 제정, 2000년 개정) 등 전국단위의 법률은 물론 관련 하부규정인 세부규칙, 지방성 규칙들의 제·개정 등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관리규정의 제정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建设工 程服 计 企 业 管 理 规 定)>; 이하 <관리규정>이

라 한다)은 시장개방의 과정에서 중국 건설시장에서 활동하는 외자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중 하나이다. 이미 건설설계분야에 대해서는 2002년 <외상투자 건설공정설계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建设工 程 设 计 企 业 管 理 规 定)>이 발표되었고 지난 1월 5일에는 세부규칙에 해당하는 <외상투자 건설공정설계기업 관리규정실시세칙(外商投资建设工 程 设 计 企 业 管 理 规 定 实 施 细 则)>¹⁾이 발표되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관리규정>은 건설공정 설계시장이 아닌 컨설팅을 담당하는 건설공정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외자기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3. 초안과의 비교

<관리규정>은 이미 2005년 말에 잠정안(外商投资建设工 程 服 计 企 业 管 理 规 定 (征 求 意 见 稿)); 의견청취본, 이하 <잠정안>이라고 한다)이 완성되었으나 비교적 오랜 시간의 검토를 거쳐 2006년 9월 19일 건설부 103차 회의 및 2006년 12월 20일 상무부(商 务 部) 10차 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3월 26일자로

*** -----

1) http://www.gov.cn/zwgk/2007-02/01/content_514660.htm



시행되게 되었다.

〈잠정안〉과 본 〈관리규정〉의 가장 큰 수정 내용은 먼저 외국 자본 투자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잠정안〉 제13조는 “중의 합자 및 합작 건설공정 서비스 기업의 중국측 출자는 등록자본의 25% 이하일 수 없다”²⁾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지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리규정〉 제13조는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측 투자자는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거나 경제조직 및 등록증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잠정안〉의 투자제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잠정안〉과 〈관리규정〉은 절차상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투자기업의 설립 및 자질(資質)의 신청의 주관부문에 대한 것이다. 〈잠정안〉 제4조는 외상투자 기업의 설립과 자질 신청의 주관부문을 국무원 상무 행정주관부서 및 건설 행정주관부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리규정〉에서는 성급(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잠정안〉에 비해 주관부문을 한 급 낮추었다.

이외에 〈잠정안〉에 있던 외자기업(外資企業)에 대한 한시적 제한(제18조) 규정이 심의를 거치는 동안 이미 제한 시한이 지나 삭제되었으며, 투자기업 설립시 기업의 실행가능성 있는 공인된 연구보고(認可的可行性研究報告)를 요구하던 규정도 삭제되었다.

II.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관리 규정³⁾>의 주요 내용

1. 개관(제1~3조)

〈관리규정〉은 제1조에서 본 법의 목적을 “대외개방 확대,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라고 정의하고 법률 근거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華人民共和國建築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中華人民共和國招標投標法)〉, 〈중화인민공화국 중의합자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중화인민공화국 중의합작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 〈건설공정 품질관리조례(建設工程質量管理條例)〉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리규정〉 제2조는 본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중국 국경내에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 신청 및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관리 감독에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을 “법에 근거하여 중국 국경내에 설립, 관련 자질을 취득한 중의합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중의합작 건설공정서비스기업 및 외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정서비스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공정 감독관리, 공정입찰대행과 공정건설비용컨

- 2) 〈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徵求意見稿)〉 第十三條 中外合資經營, 中外合作經營工程服務企業中方合營者的出資總額不得低於註冊資本的25%.
- 3) 〈관리규정〉은 총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문은 장(章)별 구분은 되어 있지 않다. 아래의 구분은 필자가 내용에 따라 임의로 구분한 것이다.

설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외상투자 건설공정 서비스기업의 범위와, 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관리 관련 규정(제4조, 제5조)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하고 영업을 할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하여 상무 주관부서가 발급하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등기 및 건설 주관부서의 관련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증서(资质证书)를 취득해야 한다(제4조). 또한 기업의 영업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국경내의 합법적인 경영활동 및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 법규,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제5조).

3.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설립 및 자질 관련 규정(제6~12조)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관리는 크게 설립과, 자질 취득, 자질 관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립은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 및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가 권한을 부여한 성급 인민정부의 상무주관부서가 기업 설립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자질의 취득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담당한다. 또한 성급 인민정부의 건설주관부서가 관할구역내의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자질 관리업무를 담당한다(제6조).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설립은 급에 따라 주관 부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갑(甲)급 자질을 신청할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의 기준을, 을(乙)급 및 을급 이하의 자질을 신청할 경우 성급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의 기준을 받는다(제7조).

제8조에서 규정하는 외상투자 건설관리공정서비스기업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청인은 설립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의 상무 주관부서에 기업 설립을 신청한다.
- ② 성급 인민정부의 상무 주관부서는 신청을 받은 후 5일 내에 자료를 해당 인민정부의 건설 주관부서에 송달, 의견을 청취한다.
- ③ 성급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서한을 받은 후 10일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성급 인민정부의 상무 주관부서는 건설 주관부서의 의견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교부하고, 비준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한 경우, 30일 내에 등기기관에 기업등기 수속을 한다.
- ⑤ 기업법인 영업자격(法人营业执照)을 취득한 후,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资质)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청한다.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 성급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로부터 자질을 비준받으면, 비준일로부터 30일 내에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등기해야 한다(제9조).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제10조).

- ①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설립신청서
- ②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계약과 정관(외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관만 제출)
- ③ 기업명 사전심사비준 통지서
- ④ 투자자 사업자등록증명, 은행자산증명
- ⑤ 투자자가 위임한 이사장(董事长), 이사회 구성원, 사장(经理), 공정기술인원 등 재직 서류 및



증명 서류

- ⑥ 공인 회계사 혹은 회계사 사무소가 심사한 투자자의 최근 3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설립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실제 설립년도에 근거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다음은 자질에 관한 규정으로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을 신청할 경우는 건설 주관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1조).

- ①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신청표
- ②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 ③ 기업법인의 영업 허가증
- ④ 투자자의 본국 혹은 지역의 사업자 등록증명, 관련 성과증명, 은행자산증명 자료
- ⑤ 공인 회계사 혹은 회계사 사무소가 심사한 투자자의 최근 3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설립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실제 설립년도에 근거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⑥ 건설공정 감독관리, 공정입찰 대행 및 공정건설비용 컨설팅기업 자질관리규정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모든 서류는 중문을 기준으로 제출하며, 원본이 외국어인 경우 중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

4.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자격관련 규정(제13~16조)

제13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은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자격관련 규정이다.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측 투자자는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거나 경제조직 및 등록증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이어야 하며(제13조), 또한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 자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련 건설공정 감독관리, 공정입찰 대행과 공정 건설비용자문기업 자질규정

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제14조).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 자질의 승급 혹은 다른 분야의 자질을 획득하려고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해 건설 주관부서의 절차를 거친다(제15조).

5. 기타(제17~20조)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 계약, 정관조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성급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의 관련절차 거쳐야 한다(제16조).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이 중 국내에서 건설공정서비스 영역에서 종사하는 과정 중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건설공정 품질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및 자질관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며(제17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투자자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투자하여 설립한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단 기타 법률, 법규, 국무원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와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가 본 규정의 해석권한이 있다(제19조). <관리규정>은 2007년 3월 26일자로 시행한다(제20조).

III. 평가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일련의 시장 개방 프로그램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와 발맞추어 법제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한 외상 기업은 2006년 말 이미 1500개에 이른다⁹⁾. <관리규정>은 이러한 외상 투자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외상투자 기업의 시장 진입과 영

업 활동에 대한 것으로, 특히 시장진입에 관한 규정, 즉 기업의 설립과 자질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준법의무 등과 같은 원론적인 규정을 담고 있기는 하나(제5조 및 제17조), 영업 범위 및 기타 외상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중국 국내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역시 시장개방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관리규정> 시행 후 시장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여 중국 국내 기업들이 인력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한편⁵⁾, 시장 개방 및 경쟁 강화가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개방 이후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 중국철로공정 총공사, 중국 철도건축 총공사, 중국 석유화학공정 총공사 등은 2005년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⁶⁾.

외상투자 건설공정에 관련한 규정은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외상투자 건설설계기업 관리규정>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초에는 세부규정에 해당하는 <외상투자 건설설계기업 시행세칙>이 시행되어 <관리규정>과 함께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V. 보론 - 기타 관련규정

<관리규정>은 외상투자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자격과 설립 및 활동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전국범위의 법령이기는 하지만, 규정(規定)의 형태로 기업은 관련 상위 법률, 법규 및 지방성 법규의 제한도 동시에 받게 된다. 따라서 실제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법규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주요 관련 법규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⁷⁾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91호, 1998년 3월 1일자 시행.

총칙, 건설허가, 건축공정의 하청 및 도급, 건축공정 감리, 건축안전생산관리, 품질관리, 법률책임, 부칙의 총 8장 85개 조문으로 구성.

(2)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 211호, 2000년 1월 1일자 시행, 총 6장 68조로 구성.

(3)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⁹⁾

* * * -----

4) 中国政府门户网站, 如世五周年我国建筑领域平稳接纳“外资军团”, 2006.12.17

5) 建筑时报 2007.3.22 참고

6) 中国政府门户网站, 如世五周年我国建筑领域平稳接纳“外资军团”, 2006.12.17

7) http://www.gov.cn/ziliao/flfg/2005-08/05/content_20920.htm

8) <http://www.bfsu.edu.cn/publish/department/42/index.aspx?newsid=639>

9) http://www.gov.cn/banshi/2005-08/31/content_69775.htm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8호, 2001년 3월 15일
자 시행.

1979년의 중외합작기업법을 개정한 것.

(4)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기업법(中华人民
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¹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0호, 2000년 10월 31일
공포.

1988년의 구법을 개정한 것으로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

(5)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中华人民共和
国外资企业法)¹¹⁾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1호, 2000년 10월 31일
공포.

1986년 제정된 구 외자기업법을 수정한 것으로 하
부 법규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시행세칙
(外商投资建设工程设计企业管理规定实施细则)¹²⁾
이 있음.

(6) 건설공정 품질관리조례(建设工程质量管理
条例)¹³⁾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79호, 2000년 1월 30
일 공포.

총 9장 82개 조문 및 형법관련 1개 조문으로 구성.

(7) 외상투자 건설공정설계기업 관리규정(外商
投资建设工程服计企业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
경제협력부령 제114호

2002년 9월 27일 발표, 12월 1일자 시행.

건설공정설계 분야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기업에
대한 규범을 담고 있음.

하부 규칙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특혜를 규정
한 <외상투자 건설공정설계기업 관리규정의 보충규
정(外商投资建设工程服计企业管理规定的补充规
定)¹⁴⁾ 및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외상투자 건설공정
설계기업 관리규정 시행세칙(外商投资建设工程設
計企业管理规定實施細則)¹⁵⁾ 등이 있음.

(8) 기타

<외상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建设工程
服计企业管理规定)>, <외상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
관리규정(外商投城市规划服务企业管理规定)> 등.

김인식

(중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 -----

10) http://www.gov.cn/banshi/2005-08/31/content_69772.htm

11) http://www.gov.cn/banshi/2005-08/31/content_69774.htm

12) http://www.gov.cn/zwgk/2005-06/06/content_4294.htm

13)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0/content_60658.htm

14)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82263

15) http://www.gov.cn/zwgk/2007-02/01/content_514660.htm